

■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변경·철회·취소 절차 신설 (§49)

현행	개정안	비고
〈신설〉	제49조(사전심사 결과 변경 등)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법 제37조제6항 및 영 제31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이미 사전심사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사전심사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법 제37조제6항 및 영 제31조제10항에 따라 이미 사전심사한 내용을 변경, 철회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신청인, 해당 사전심사 건을 검토하였던 본부세관장 및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신설) 특수관계 수입물품 사전심사 결정 후 변경·철회·취소 절차 마련 - 제49조제5항 및 제6항에서 이동하여 별도 조로 신설

III. 시행일자

2023년 02월 01일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1]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_입안계획서
- [붙임2]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_신구조문대비표
- [붙임3]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_개정전문

I Contact



김동주 관세사
T 032-742-8250
E djkim@esein.co.kr



정현욱 관세사
T 070-4353-1513
E hujung@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3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